

## 분양대상 토지 내역

1. 공급대상 필지 내역 .....	2
2. 안성제 4 산업단지 .....	3
가. 토지이용계획도 및 세부필지 위치도 .....	3
나. 건축행위 기준 .....	4
3. 안성원곡 산업단지 .....	6
가. 토지이용계획도 및 세부필지 위치도 .....	6
나. 건축행위 기준 .....	7
4. 안성제4 잔지 지적 위치도 .....	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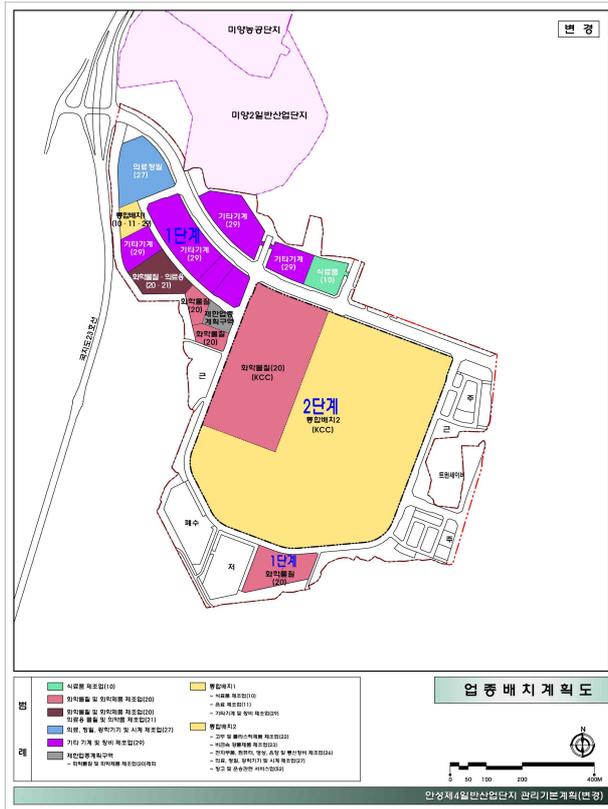
# 1

## 분양필지 세부내역

사업지구	용도	가지번	지번	면적(m <sup>2</sup> )	공급예정금액 (원)	공급방법	토지사용시기
안성원곡 물류단지	근린생활	SR1-4	칠곡리 928-5	570.0	371,070,0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근린생활	SR1-6	칠곡리 928-7	509.1	321,751,2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근린생활	SR1-7	칠곡리 928-8	504.0	321,552,0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단독주택	R1-3	칠곡리 926-3	325.0	190,450,000	추첨	잔금납부 후
안성제4 일반산업 단지	주차장	P1-1	양촌리 459	1,729.9	451,503,9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주차장	P1-2	양촌리 458	1,743.4	449,797,2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근린생활	S1-7	양촌리 456	1,178.8	555,214,8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단독주택	T2-3	양촌리 466-7	264.2	98,810,800	추첨	잔금납부 후
	단독주택	T4-4	동촌리 293-4	263.9	98,698,600	추첨	잔금납부 후
안성제4 일반산업 단지	잔지	-	동촌리 72	182.0	9,100,0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잔지	-	동촌리 72-2	77.0	3,850,0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잔지	-	동촌리 72-4	61.0	3,050,0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잔지	-	동촌리 72-5	58.0	2,900,0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잔지	-	동촌리 104	41.0	2,460,0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	잔지	-	동촌리 110-2	47.0	2,632,000	경쟁입찰	잔금납부 후

## 2 안성제4 산업단지

### 토지이용계획도



### 세부필지별 위치도



## □ 건축행위기준

### ○ 지원시설구역

「산업집적법」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및 허가하는 건축물

### [지원시설용지(근린생활시설용지)]

구분		계획내용
건축물 용도	허용용도	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(마권 장외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관람장 및 동·식물원 제외)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(불안당(납골당) 제외)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(정신병원,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)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1호의 노유자시설 (노인복지주택 제외)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3호의 운동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4호의 업무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8호의 창고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 용도
건폐율		70% 이하
용적률		300% 이하
최고층수		5층 이하
배치		시행지침 참조
형태		시행지침 참조
색채		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
건축선		건축한계선 : 도로변 2m ※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

## [지원시설용지(단독주택용지)]

구분		계획내용
건축물 용도	허용용도	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호의 단독주택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※ 단독주택 이외의 용도(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)는 지상1층에만 설치하고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 폐 율		60% 이하
용 적 률		180% 이하
최고층수		4층 이하
1필지당 가구수		5가구 이하(점포주택은 점포 외 3가구 이하)
배 치		시행지침 참조
형 태		시행지침 참조
색 채		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
건 축 선		건축한계선 : 중로변 2m, 소로변 1m ※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

## ○ 공공시설구역 :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

### [주차장용지]

구분		계획내용
건축물 용도	허용용도	「주차장법」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※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% 이상이어야 함. 다만,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부분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, 문 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발매소, 마권 전화 투표소, 관람장 및 동·식물원 제외),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(불안당(납골당) 제외), 판매시설 중 상점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% 이상이어야 함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		70% 이하
용적률		300% 이하
높 이		5층 이하
건축선		건축한계선 : 도로변 2m ※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



## □ 건축행위기준

### [지원시설용지(근린생활시설용지)]

구분		근린생활시설용지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SR
	허용 용도	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시설(자목 중 장의사, 차목의 단란주점,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)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다목 관람장 제외)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(납골당 제외)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및 오피스텔, 금융업소, 사무소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나목 전신전화국, 라목 통신용시설</p>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	60% 이하	
용적률	200% 이하	
높이	4층 이하	
배치	-	
형태	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시형으로 권장한다.	
색채	<p>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</p> <p>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.</p>	
건축선	<p>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를 공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.</p> <p>- 전면도로변:3m, 녹지변:2m</p> <p>공개공간의 지상에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(조경,파고라,휴게 의자 등)을 제외한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.</p>	

## [주거시설용지]

구분		주거시설용지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R
	허용용도	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(다중주택, 공관제외)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일반음식점, 기원, 나목 휴게음식점, 제과점, 다목 서점, 라목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골프연습장 등, 마목 공연장, 종교집회장, 바목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업소, 출판사 등, 자목 사진관, 표구점, 학원 등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	60% 이하	
용적률	150% 이하	
높이	3층 이하	
배치	-	
형태	지붕 :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 이외의 형태로 한다. 다만,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. 담장 : 도로와 면하는 부분의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하며, 필요한 경우 1.2m이하의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한다.	
색채	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한다.	
건축선	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. - 전면도로변:1m, 녹지변:2m	

## [주차장용지]

구분		주차장용지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P
	허용 용도	주차전용건축물, 단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의거 주차 전용건축물 설치 시 전체 건축연면적의 30%이내 범위에서 아래 시설의 설치 가능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자목의 장의사, 차목의 단란주점,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다목의 관람장 제외)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, 다목 상점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	60% 이하	
용적률	200% 이하	
높이	4층 이하	
배치	-	
형태	-	
색채	-	
건축선	주차장부지에 주차용도 및 주차용도이외의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- 전면도로변:3m, 녹지변:2m	

# 4

# 안성제4 잔지 지적 위치도

## 지적 및 건물 개황도

